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**흑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**

1. 관련 근거

- 가.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(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(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)
- 나.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43호)

2. 흑서기 기간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**한시적으로(6월~9월) 확대**하여 운용하고자 하오니, 건설현장 점검·감독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,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및 건설업 안전·보건관리자 모임 등을 활용하여 아래 내용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

- 1)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
- 2) 냉장고, 냉동고, 제빙기 임대비용
- 3) 아이스조끼, 쿨토시
- 4)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 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* 설치·해체·임대비용**

* 천막,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(설치 및 해체비용), 컨테이너(임대비용)

**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,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

- 5)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, 식염포도당 등

나. 적용기한: 6월~9월(한시적)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

수신자 청지청 건설산재지도과(산재예방지도과, 팀),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

전문위원 류채은 행정사무관 이덕원 건설산재예방 전결 2023. 5. 2.
정책과장 박상원

협조자

시행 건설산재예방정책과-1776 (2023. 5. 2.) 접수 건설산재지도과-3077 (2023. 5. 3.)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, 고용노동부)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8942 팩스번호 044-862-8075 / csilver55@korea.kr / 대국민 공개